
제7회서울특별시의회(임시회) 본회의회의록 제7호
시의회의사당

일시 1957년1월23일(단기4290년)(수) 상오10시45분

의사일정

1. 4290년도서울특별시일반회계·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
-

부의된안건

○보고사항 ... 1面

1. 4290년도서울특별시일반회계·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...
2面
-

○의장; 상오10시45분 출석의원 24인으로 제7회임시회 제7차회의의 개의을 선포함.

○간사장; 제7회임시회제6차회의록을 낭독하여 이의없이 통과되고

○의장; 제7차회임시회 제7차회의록서명위원으로 김동순 김만길 양의원 지명함.

○보고사항

○간사장; 서울특별시립소년관설치조례안을 1월16일자시장으로부터 접수하여 사회보건 재정예결위원회에 심의부탁하였다고 보고하고

○의장; 금후개의시간을 엄수하여야 한다는 요지의 발언을 함.

1. 4290년도서울특별시일반회계·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

○노승환 의원; 명세서143항 시설비는 건설국소관으로서 영선비에 계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무국소관의 시설비로 계상한 이유를 집행부에 질의하여

○이갑수 의원; 본시설비는 내무위원회에 무수정통과시켰다고 발언하고

○사계과장; 질의에 답변함.

○김규원 의원; 시세잡수입의 수정동의안을 제출하고 제안설명을 함.

○조기항 의원; 예산심의순서로 보아 세출을 심의완료한후 세입을 심의하는것이 원칙이므로 지난 4개항목의 예산을 책정한후 현세입을 심의하여야한다고 발언하여

○이갑수 의원; 조기항의원의 발언은 순서상 타당하다는 찬성발언을 함.

○홍순우 의원; 4개항목의 예산을 책정하기 위하여 상호회의1는 지금 산회하고 하오에 속개할것을 동의하여 의의없이 결정되어

○의장; 하오2시속개하기로 하고 상호11시35분 산회를 선포함.

○의장; 하오3시40분 재석의원 33인으로 속개하여 선포함.

○이갑수 의원; 보류중에 있던 청량리 로타리 문제를 비롯하여 중요한 4개안건을 처리함에 있어

1. 금일회의는 시간을 제안치 말것

2. 시장이 필히 참석하여야 된다는 발언이 있었음.

○노승환 의원; 본건심의에 있어 시장외에 관계국과장이 필히 참석할것을 이갑수위원의견에 첨가하고 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중 청량리 로타리 공사건을 설명함.

최인호위원외 19인으로부터 본건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제출되었다고 보고함.

○최인호 의원; 토목비중 청량리 로타리 공사비 180만환중 1천3백만환을 삭감하여 전농동 답십리간의 하천공사비로 증액하자는 요지의 제안설명이 있었음.

○강을순 의원; 예산책정에 있어서 동대문구청장의 요구하였다는데 로타리 공사비만 계상하고 하천비를 삭감한 이유를 질의함.

강을순의원외에 답변함.

○박수형 의원; 실지조사한바 로타리 공사보다 하천공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수정안에 찬성발언이 있었음.

○이갑수 의원; 본건은 로타리 공사와 하천공사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발언함.

○김재광 의원; 서울의 대도시를 건설키 위하여 소소한 부작용이 발생하나 이를 제거하고 기위책정된 예산이니 이를 실시하고 별도로 1천5백만환정도 ○○ 집행부로부터 하천비로 발의토록 하자고 발언함.

○방동석 의원; 본공사비로서 2개공사비로 분하여 실시한다면 양공사중 1개소도 미완될 것이니 기이책정된 예결위안대로 하자고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발언함.

○조영석 의원; 현지조사한 내용을 설명하고 예결위안대로 하자고 수정안에 반대발언함.

○박수형 의원; 수정안에 대한 찬성발언이 있었음.

○김석근 의원; 본건표결이 중요성에 鑑하여 무기명투표로

하자고 동의함(불성립)

○정태희 의원; 본공사비로서 2개의 공사를 실시한다는 것은 예산상 생각할바있다고 발언함.

○의장;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한바 재석42인중 가 22인 부1인으로 가결됨.

○노승환 의원; 역청공장이전비를 설명함.

○의장; 김재순의원의 15인으로써 본건전액삭감하자는 수정안이 제출되었다고 보고함.

본건전액을 삭감하여 구토목비에 편입할 토목사업비에 충당하자는 요지의 제안설명이 있었음.

○강을순 의원; 본건에 대하여 이전장소및 용지매입여하에 대한 질의가 있었음.

○건설국장; 이전장소를 세검동으로 내정하고 이는 국유재산이므로 중앙당국에 사용할것을 진정중이라고 답변함.

○한상기 의원; 건설국장답변중 세검동으로 장소를 내정한것은 장소위치로 보아 부적당하다고 발언함.

역청공장이 건설사업에 중요한것으로는 생각하나 인체에 미치는 본건상의 문제 및 교육상의 견지에서 이전하여야 타당하다고 수정안에 반대발언함.

○이갑수 의원; 본건심의에 있어 건설분위의 심의내용의 부당성을 지적함.

○노승환 의원; 건설분위에서 본건심의 경위를 설명하고 이전의 부당성을 지적함.

○이중구 의원; 토론종결을 동의하여 재석 40인중 가 21인으로 미결함.

○의장;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한바 재석40인중 가 19인 부 12인으로 미결됨.

- 노승환 의원; 용지비 4백만환을 존치하고 기타는 삭제키로 하자고 동의측에 요구하여 이를 수락함.
- 조기항 의원; 본건이전의 필요성을 강조함.
- 김동순 의원; 회의규칙 제31조에 의한 규칙발언이 있었음.
- 이갑수 의원; 수정동의안이 미결되었으니 예결위안을 표결하고 역시 미결일 경우 집행부의 원안표결하여야 된다고 규칙발언함.
- 의장; 수정안을 재표결한바 재석41인중 가 18인 부 11인으로 폐안되고 예결위안이 확정됨.
- 노승환 의원; 건설국소관영선비에 대하여 설명하고
- 박수형 의원; 시의회의사당공사비에 대하여 수정안을 제출하고 제안설명함.
- 김만길 의원; 6·25 동란으로 인하여 빈곤한 시민의 실정을 알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수정안을 제출하게 되는데 대하여 유감의 뜻을 표하고 반대발언하고
- 조영석 의원; 본안은 의원의 불편을 제거하기 위한것은 아니며 이미 의회구성전 4288년도예산에 책정된것이며 앞으로 2,3차의 연차계획을 세워 차기의회구성시까지 완료할것에 찬성발언함.
- 김재광 의원; 현전시하에 있어서 의회의 존엄성을 논할 필요가 없으며 ICA의 원조를 얻고져 시민의 부담으로 기초공사를 한다는 것은 필요없다고 반대발언하고
- 방동석 의원; 의회의 권위만 생각하여서는 안되며 산적인 긴급공사등등을 하여야 한다고 반대발언함.
- 김규원 의원; 앞으로의 긴급한 일은 많은줄 아나 물가등귀로 인하여 명년에 반대한 예산이 필요하게 될지도 모르니 연차계획으로 우선기초공사를 하여야 한다고 찬성발언함.

○박수형 의원; 여러 반대발언으로 인하여 본안의 철회를 발언하고

○의장; 본안의 철회에 대하여 이의를 무리 이의없이 철회 됨.

○노승환 의원; 우남회관공사에 대하여 수정안이 제출되었다고 발언하고

○김제윤 의원; 제안설명

○노승환 의원;

1. 건립위원회에서 얼마나 되는 찬조금이 나왔으며

2. 위원의 독지가들에 의하여 건립할수 있는지를 집행부에 질의하고

○김재순 의원; 건립위원의 명단을 낭독하고 이 회관을 건립하게 된 경유를 설명하여

1. 6억환으로서 완전이 건립할수 있는지

2. 규약제17조에 있는바와 같이 독지가에 의한 찬조금을 강구해 보았는가

3. 장기대부를 계획해보았는가

4. 그 대지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는지

5. 준공후의 운영권의 소재

6. 5천만환의 국고보조는 확실한것인지를 집행부에 질의하고

○방동석 의원;

1. 규약제2조에 의거 시장이 임의로 대통령 제80회 탄신을 기념하기위하여 한것인지, 또 제17조에 의거 찬조금을 얼마나 계상하였는지

2. 4290년도 예산에 삭감될 경우 그후 수습책

3. 제1, 2차공사가 진행중인데 중지된다면 권리보장이 어떻

게 되며

4. 시에서 5천만원만 지출한다면 그외의 자금은 어떻게 강구할것인지

5. 그 공사의 내부수리비는 얼마나 되겠는지 등을 질의하고

○의장; 하오7시25분속개하기로 하고 7시10분휴회를 선포함.

○김재광 의원;

1. 건립위원회의 법적근거와

2. 건립위원회는 어떤 근거로 예산을 요구할수 있는지를 집행부에 질의하고

3. 5천만원만 있으면 공사를 완료할수 있는지를 수정안제안측 질의함.

○시장부시장 건설국장 재무국장; 각각질의에 상세히 답변함.

○김제윤 의원; 방동석의원 김재광의원 질의에 답변함.

○박수형 의원; 시간상 앞으로 질의 2명 찬성발언 3명 반대발언 3명정도로서 토론을 종결하자고 동의함.(불성립)

이종윤의원 김상흡의원 김동순의원 노승환의원 거14일차 기자회견시담화문제및 우남회관건립위원회로서의 공사비조달 문제가 있었음.

○시장; 각질의에 답변함.

홍순우의원 김경원의원 김재순의원 수정동의안에 대한 찬성발언을 하고 방동석의원 김재광의원 김주홍의원 수정동의안에 대한 반대발언이 있었음.

○노승환 의원; 의회규칙제32조 2항에 의거하여 본건의 중요성에 감하여 무기명투표로 표결하자고 동의함.

○강을순 의원; 종전과 같이 거수로 표결하자고 결의함.

○방동석 의원; 기립표결하자고 재결의함.

○의장; 표결을 실시한다.

결의 재석 46인중 가 24인으로 가결되어 거수로서 표결한
바

수정동의안 재석 45인중 가 28인으로 가결됨.

○의장; 하오9시48분 산회를 선포함.

(21시 48분 산회)
